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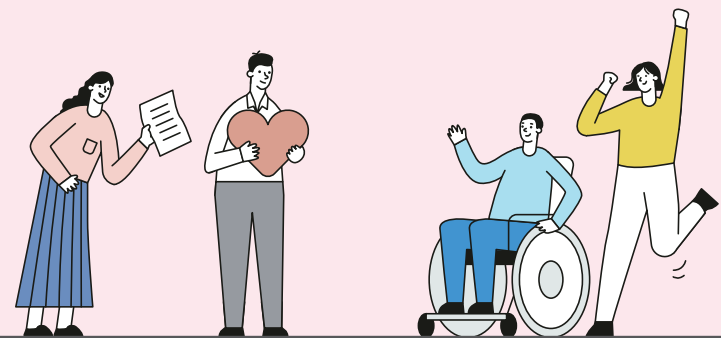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달라지는 주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안내드리는 것으로 추후, 정책추진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서비스 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02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시간 확대	03
3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4
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05
5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06

II

소득·일자리 지원

6 장애아동수당 인상	08
7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09
8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10

III

장애인 등록

9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불편 개선	12
10 소아청소년과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13
11 신장장애인 재판정 불편 최소화	14

IV

건강·생활 지원

1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강화	16
13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17
14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18
15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지하철에서 이용 가능	19
16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20
1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21
1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확대	22

V

장애인 인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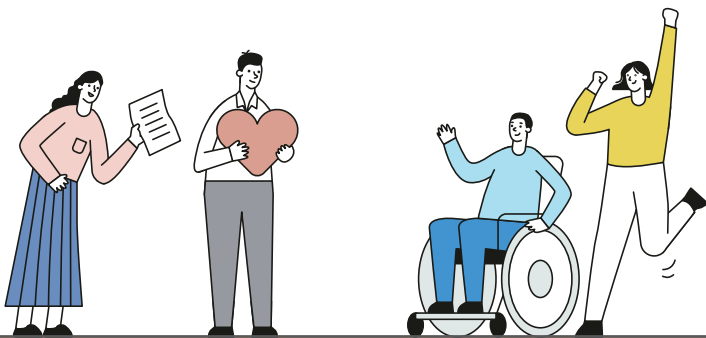
19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24
20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에 따른 현장 안착	25
21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신설	26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운영 강화	27

참고

2022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28
--------------------	----



서비스 지원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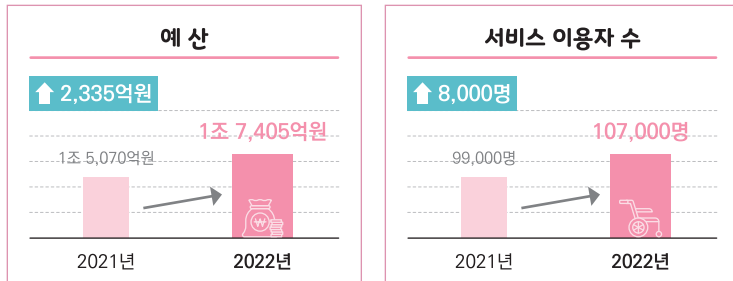
-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시간 확대
- 3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5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21년 1조 5,070억 → ‘22년 1조 7,405억(2,335억, 15.5% 증))
 -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단가(원) : (‘21) 14,020 → (‘22) 14,800 △이용자수(천명) : (‘21) 99 → (‘22) 107
 - 최종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 (‘21) 3천명, 단가 1,500원 → (‘22) 4천명, 단가 2,000원
 -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65세 보전급여)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주요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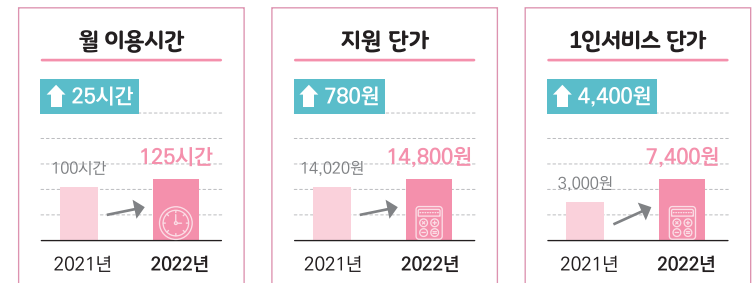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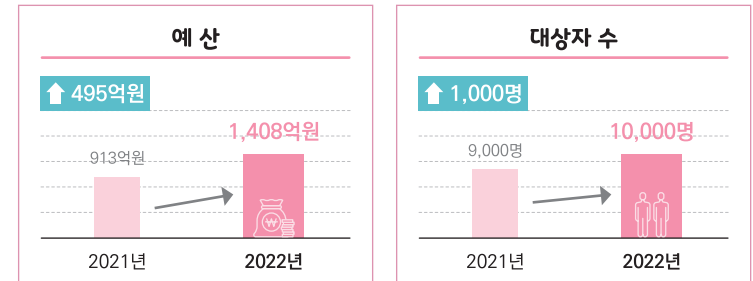


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시간 확대

- ☞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 지원 확대
(‘21년 913억 → ‘22년 1,408억(495억, 54.2% 증))
 - (지원대상)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9,000명(‘21) → 10,000명(‘22)
 - (제공시간) 기본형 기준 월 100시간(‘21) → 125시간(‘22)
-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 (가산급여)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 급여 인상
- (‘21) +3,000원 → (‘22) +7,400원(예산편성단가 기준 150%)

주요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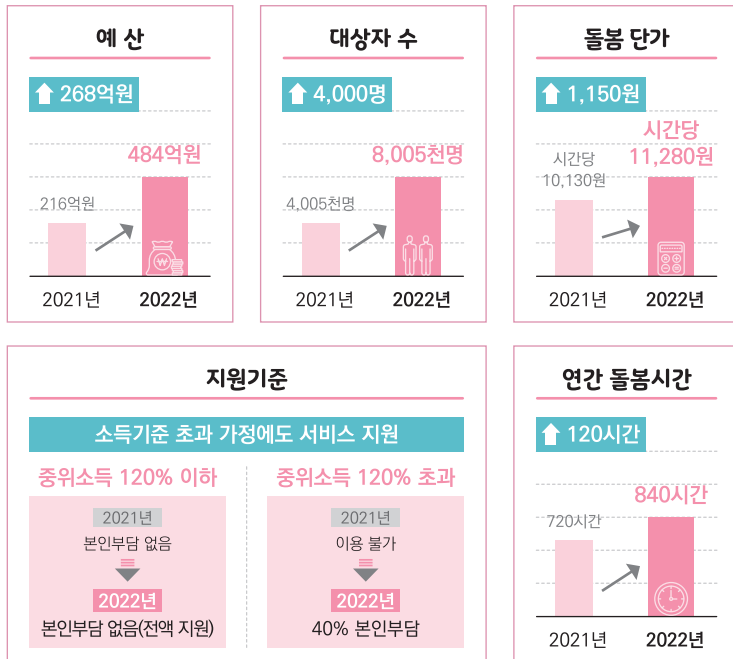


3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대상(+4천명) 및 연간 지원시간(+120시간) 확대 ('21년 216억 → '22년 484억(268억, 124.6% 증))
 - 기존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증장애 아동 돌봄지원 대상을 기존 4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4,000명)
 -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없이 이용,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본인부담률 40%)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 시간당 돌봄 단가 : 11,280원
 -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

주요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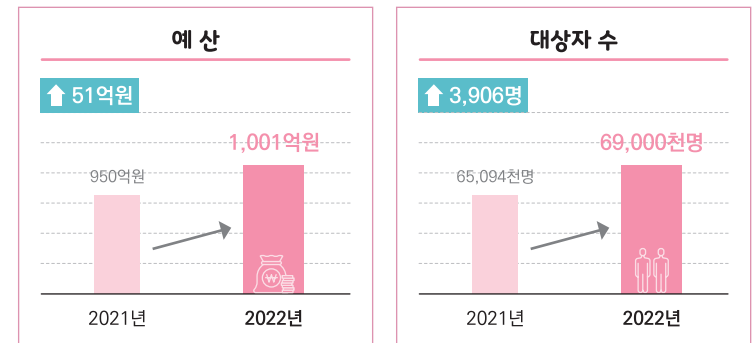
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4천명 확대 ('21년 950억 → '22년 1,001억(51억, 5.4% 증))
 -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5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3,906명)
 - (지원대상) 현재 만18세 등록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중
 - (지원기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월 22만원 바우처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최대 8만원)
 - *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지원 필요성 인정시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원)

가구원수	바우처금액	정부지원	본인부담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월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월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월 8만원

주요 변경 사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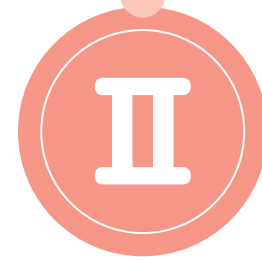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실시
- 시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 8월 발표)의 단계적 추진의 일환으로 3년간 시행(‘22~’24) 예정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
 - 지역별로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조성 및 자립지원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주요 변경 사항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년)

3년간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전국 10개 지자체 총 200명 대상



소득·일자리 지원

- 6 장애아동수당 인상
- 7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 8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6

장애아동수당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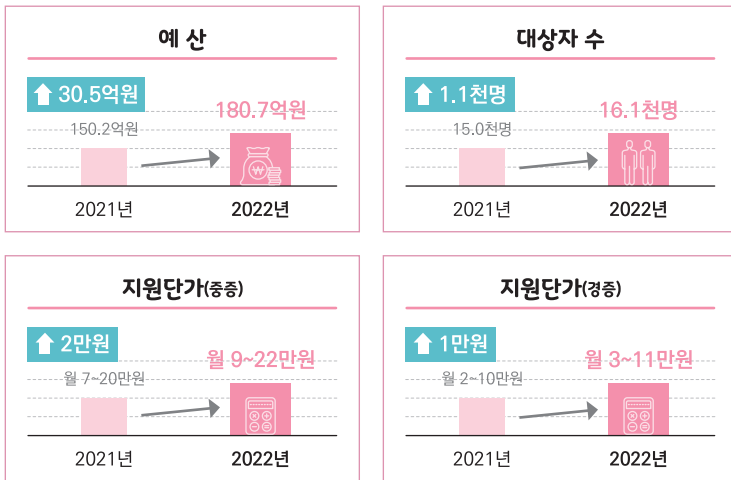
-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 및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아동수당 예산 증액 ('21년 150.2억 → '22년 180.7억(30.5억, 20.3% 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아동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단가 인상
 - (지원대상) '21년 15.0천명 → '22년 16.1천명(+1.1천명, 7.3% 증)
 - (단가) '21년 대비 '22년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단가

(단위: 만원/월)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중증	20 → 22	7 → 9	15 → 17
	경증	10 → 11	2 → 3	10 → 11

주요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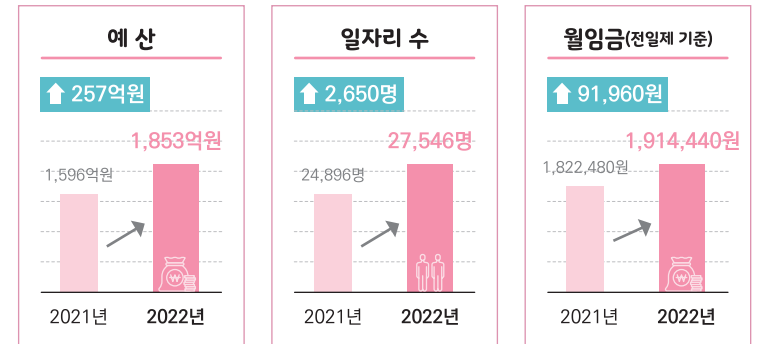


7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를 확대
 - 장애인일자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수 확대
 - (예산) '21년 1,596억원 → '22년 1,853억원(257억원, 16.1% 증)
 - (일자리) '21년 24,896명 → '22년 27,546명(2,650명, 10.6% 증)
 -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 상향
 - 일반형 전일제 기준 '21년 월 1,822천원 → '22년 월 1,914천원(92천원, 5.0% 증)
 - 장애인일자리 직종 및 직무 다변화
 - 기존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의 직무 외 스포츠 영상 촬영 및 편집, 방역·소독 활동 영역까지 확대

주요 변경 사항



8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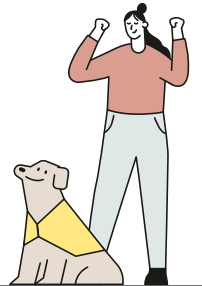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근로 욕구·환경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 (목적)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욕구·환경 등 새로운 기준에 의한 맞춤형 소득·고용 연계 기준 마련
 - (대상)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신청자 1,000명**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18~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대상(단,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소득활동종합조사 후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사업 절차



III

장애인 등록



- 9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불편 개선
- 10 소아청소년과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11 신장장애인 재판정 불편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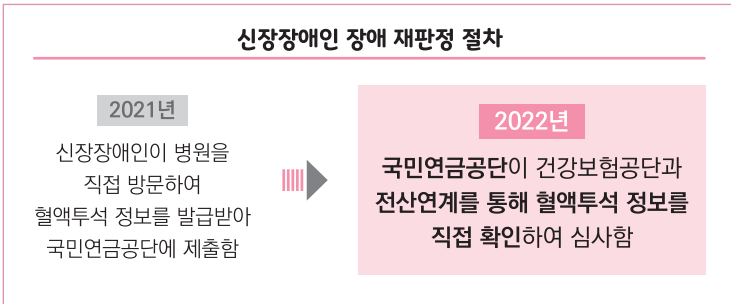
9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불편 개선

- ☞ 장애정도 정밀심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의료기관 등에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심사자료 제출 불편을 최소화함
*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근거('22. 1. 28일 시행)
- 아울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확보하여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다만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시(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는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제출은 현행과 동일

주요 변경 사항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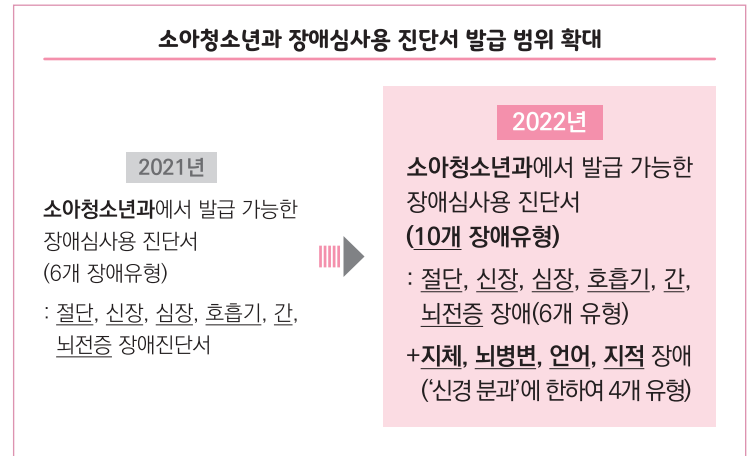
10

소아청소년과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 소아청소년과가 실제 진료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진단서 발급 권한을 추가 인정하여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서 발급 불편을 해소함('22. 1월 시행)
- 현재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가능한 진단서는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등 6개 장애유형으로 제한되었으나,
-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에 대한 소아청소년과('신경 분과'에 한함)의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권한을 추가 인정

주요 변경 사항

소아청소년과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11

신장장애인 재판정 불편 최소화

-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 → 4년으로 연장하고,
-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 다만 영구장애 인정 이후에도 매분기별 신장이식자 명단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 정도를 변경(중증 → 경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계속함

주요 변경 사항

신장장애인 재판정 불편 최소화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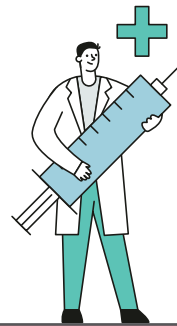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 2년
- 신장장애인 영구장애 인정 여부 : 불인정



2022년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 4년
- 신장장애인 영구장애 인정 여부 : 3회 재판정하는 동안 장애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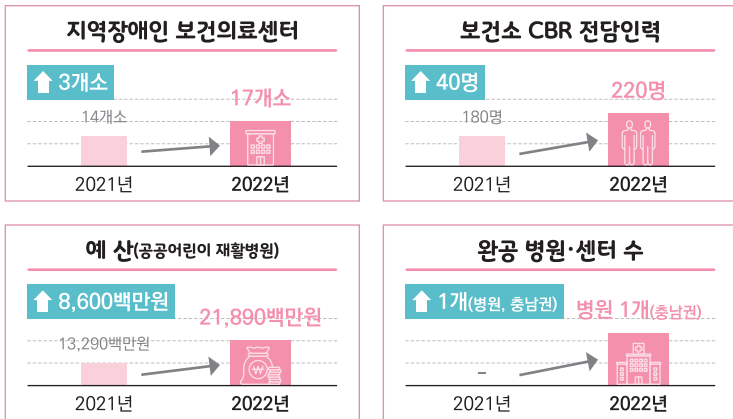
건강·생활 지원

- 1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강화
- 13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 14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 15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지하철에서 이용 가능
- 16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 1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 1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확대

1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강화

- ☞ 장애인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사업 개발, 통계구축, 교육과정개발, 건강 정보제공 등 건강보건관리의 중심축 기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장애인 주치의,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 조정·지원 등 역할 수행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필요도 평가 후 대상군별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
 - ☞ 장애 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 과제로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
 - 건립 외에 수도권·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여 미충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중
 - '22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완공 및 '23년 개원 예정
- * 관련 사업 예산 : '21년 13,290백만원 → '22년 21,89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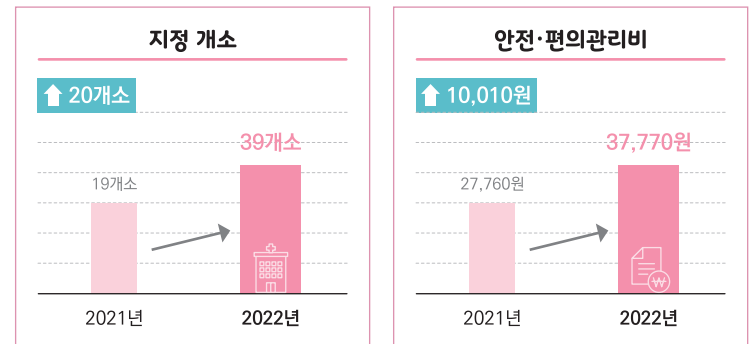
주요 변경 사항



13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 ☞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 의사소통 장벽을 개선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효과적 건강관리 도모
 - '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 : 20개소
 - 의료기관의 시설개보수·장비구입 및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 확보 및 안전·편의관리비 인상 추진
 - (예산) '22년 예산 1,140백만원
 - (안전·편의관리비) '22년 37,770원

주요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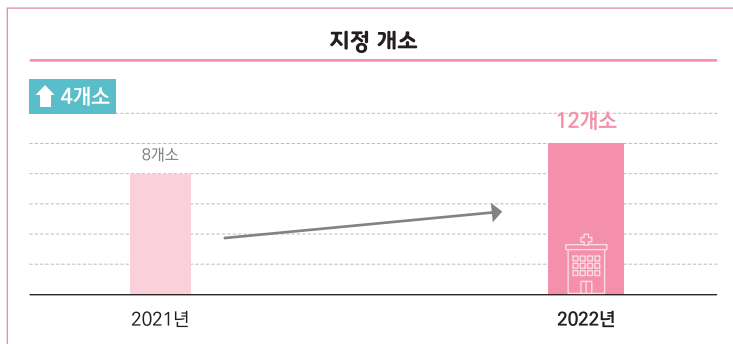


14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 ☞ 임신·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질환 대상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위한 예산
 - (1차년도) 개소당 시설·장비비 350백만원, 인건비·사업비 37.5백만원
 - (2차년도) 개소당 인건비·사업비 150백만원

📈 주요 변경 사항



15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지하철에서 이용 가능



-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 이용 가능 ('22. 9월 예정)

*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복지카드

- 현재는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 '22. 9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지하철이용시 복지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무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 다만 기존 교통복지카드 사용자는 재발급 신청하여 카드 교체 필요
- ※ 수도권·충남에서 발급된 카드는 재발급 불필요(기존 카드 사용 가능)

📈 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 이용

2021년
서울에 사는 장애인 A씨가 부산에 방문하여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지하철 탑승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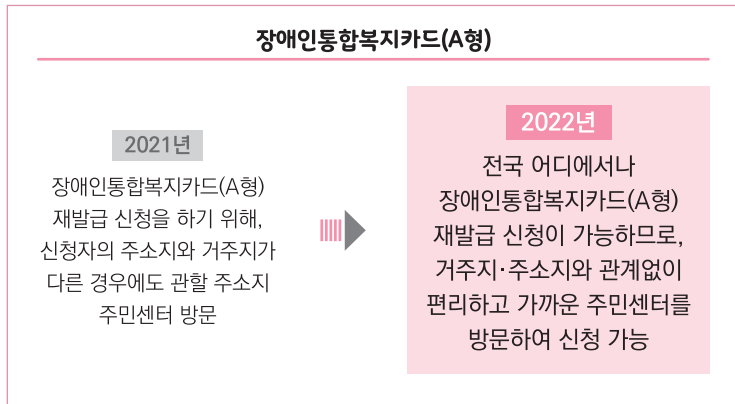


2022년
서울에 사는 장애인 A씨가 부산에 방문하여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본인의 교통복지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무임 승차 가능**

16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 ☎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21)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 가능
→ ('22) 전국 어디거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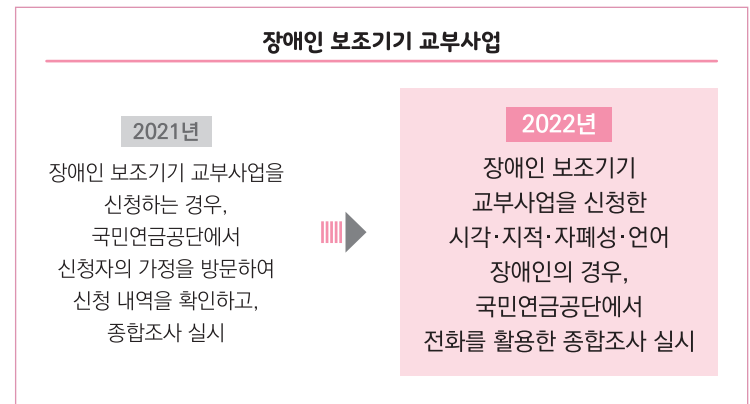
📌 주요 변경 사항



1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 ☎ 장애인등록심사를 완료한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비대면 종합조사 실시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신속한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신청자 가정을 방문(국민연금공단)하여 대면 종합조사 실시
→ (개선)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 가능*
- * 단, 신청자가 가정 방문을 통한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대면 종합조사 가능

📌 주요 변경 사항





1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안전한 일상 생활 도모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낙상알림기' 추가·확대

- ('2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총 35개
→ ('22) 낙상알림기*를 추가하여 교부품목 총 36개
- * (지원기준액) 지체, 뇌병변 장애인 대상 최대 55만 원, (내구연한) 5년

(참고) 낙상알림기

- 침대에서 장애인 등이 낙상했을 때 낙상 알림을 소리로 알려거나 보호자 손목시계로 알림을 전달하는 알림기



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2021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35개 품목 무료 교부



2022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36개 품목 무료 교부



장애인 인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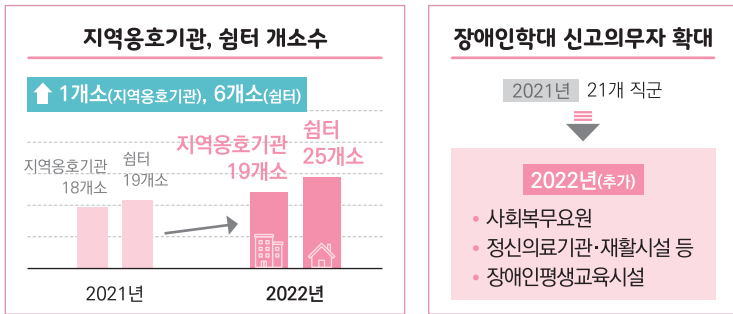


- 19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20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에 따른 현장 안착
- 21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신설
-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운영 강화

19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1개, 지역 18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18개+국비지원(서울) 1개) 운영 중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신설 예산 반영
 - 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학대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 규정 마련 등 학대예방 및 보호 강화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제59조의7제2항, 제59조의12제2항·제5항, 제59조의13, 제59조의16, 제59조의17, 제88조의3

🔑 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 행위자 지원

2022년(신설)

행위자 상담 및 교육 참여 의무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 특례

2022년(신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 특례

학대피해자 진술조력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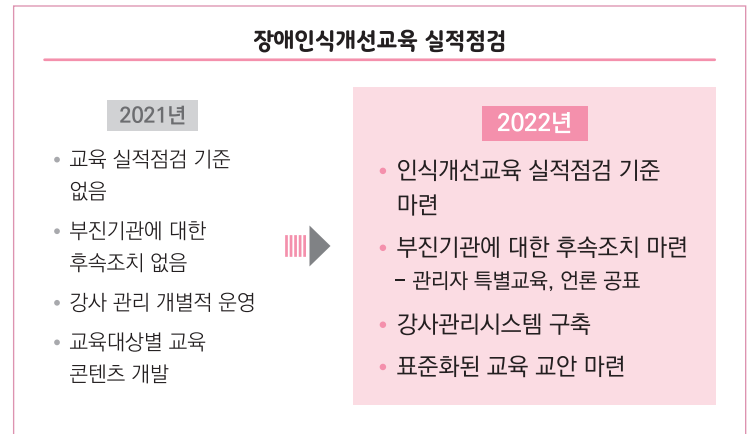
2022년(신설)

학대피해자 진술조력인 참여

20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에 따른 현장 안착

- ☞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공표, 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 * 실적배점표상(교육계획, 교육방법 등) 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
- 교육 질 표준화를 위한 교육 표준 교안 개발
 -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표준화된 인식개선 교육 교안 개발
- 교육 연계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양성 사업 운영
 -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전문, 맞춤형, 특별) 양성
 - 인식개선 강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종합 플랫폼 마련

🔑 주요 변경 사항



21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신설

☞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 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 지자체의 장애아동 쉼터 운영 의지 등을 고려하여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
 - * '22년(上)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및 설치대상 공모 선정
 - ** '22년(下)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개소 및 쉼터 운영 본격 추진

주요 변경 사항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2021년
장애아동 전용 쉼터 부재로
특성에 맞는 보호 어려움



2022년
장애아동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관리 제공

2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운영 강화



☞ 건축물 등에 장애인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설치·관리 되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BF 인증제도의 운영 강화

-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체가 종전 국가와 지자체에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
 - 의무대상시설은 국가·지자체 신축 건물에서 공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로 확대
- 인증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인증의무대상은 의무적으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
- 인증 의무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인증 의무가 없는 대상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

주요 변경 사항

BF 인증제도

2021년

- 의무인증 대상
 - 국가·지자체 신축 건물



2022년

- 의무인증 대상 확대
 - 국가·지자체 설치 도시공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물
 -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지자체출자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물
 - 민간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인증유효기간 5년

<신설>



- 인증유효기간 5 → 10년 확대
-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원
- 의무인증 대상이 아닌 시설이 인증신청 시 인증수수료의 50% 감면

<신설>



(단위: 백만원)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	
		증감액(B-A)	비율(B-A/A)
3,695,700	4,085,394	389,694	10.5

장애인정책국 '22년 예산은 4조 853억 94백만원으로 '21년 예산 3조 6,957억원 대비 3,897억원(10.5%) 증액

주요증액사업

1 장애인활동지원

'21 15,217억원 ▶▶▶ '22 17,405억원(+2,188억원, 14.4%)

2 장애인연금

'21 8,291억원 ▶▶▶ '22 8,326억원(+35억원, 0.4%)

3 발달장애인지원사업

'21 1,524억원 ▶▶▶ '22 2,080억원(+556억원, 36.5%)

4 장애인일자리지원

'21 1,596억원 ▶▶▶ '22 1,853억원(+257억원, 16.1%)

5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21 133억원 ▶▶▶ '22 219억원(+86억원, 64.7%)

6 장애아동가족지원

'21 1,173억원 ▶▶▶ '22 1,492억원(+319억원, 27.2%)

7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1 5,828억원 ▶▶▶ '22 6,224억원(+396억원, 6.8%)

8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21 89억원 ▶▶▶ '22 106억원(+17억원, 19.1%)

* 2021년 예산 : 추경을 포함한 수정 예산임